

마이더스 기본 TDF 205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 [펀드코드: DV795]

투자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마이더스에셋자산운용(주)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또는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는 주식형 및 주식-재간접형 모투자신탁과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주식 및 ETF,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으로 인해 가격변동위험, ETF투자위험, 국가위험, 파생상품 관련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마이더스 기본 TDF 2050 혼합자산 자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국내 채권 관련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을 포함)에 대한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하며, 205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합니다.
-------------	--

분류	투자신탁, 혼합자산,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	--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8% 이내	0.40	0.20	0.93	0.40	126	175	227	338	6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0.70	0.50	0.99	0.70	78	160	246	430	980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4% 이내	0.30	0.10	0.62	0.30	77	115	156	243	5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45	0.25	0.69	0.45	52	107	165	289	658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비용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및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60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하며,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2/08/26~2023/08/25	-	-	-	
온라인-개인연금 (C-Pe1)(%)	2023-04-21	-	-	-	-	10.07
비교지수(%)	2023-04-21	-	-	-	-	-
수익률 변동성(%)	2023-04-21	-	-	-	-	5.85

(주 1) 비교지수 : (BM 없음)

(주 2)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성명	생년	직위	운영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혼합자산) (%)				운영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영규모 (억원)	운영역		운영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천주	1971	책임 (본부장)	15개	1,942	19.70	-			21년 7개월
유주형	1986	부책임 (부장)	14개	2,532	42.54	30.81	42.54	30.81	8년 7개월
김재현	1992	부책임 (대리)	5개	477	-	-			2년 10개월

(주1) '책임운영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영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영전문인력"은 책임운영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영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영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영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영경력년수'는 해당 운영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li>•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신탁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므로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중소형주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 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 전략 수행에 따른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및 국내 채권 관련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설정하여 주식 및 채권 관련 자산의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원금의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국가위험</b>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의 투자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b>혼합자산 투자신탁 투자위험</b>	일반적으로 혼합자산 투자신탁은 국내외 다양한 증권, 특별자산, 부동산 등에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전략에 따라 지역간 또는 자산의 종류간 시장상황에 따른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에 따라 특정 지역/자산/섹터등에 집중투자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변동성 증가, 수익률 저하 등 본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산별 또는 지역적으로 충분히 분산하여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투자전략이 투자위험을 반드시 낮추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b>ETF투자위험</b>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글로벌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ETF)는 해당 상장 국가의 거래소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한 ETF 등의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잔여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으며, 잔여자산 분배시까지 기간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동 ETF 매매에 대한 과세처리 방법으로 인해 매매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해당 매매에 적용되는과표 기준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b>집중투자에 따른 위험</b>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증권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 등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b>해외 주식 간접 투자로 인한 위험</b>	이 투자신탁의 일부 모투자신탁은 세계 각국(신흥시장 포함)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국가의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주식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b>투자신탁 해지의 위험</b>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의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b>매입 방법</b>	<b>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b>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b>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b>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b>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b>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b>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b>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10영업일(D+9)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b>환매수수료</b>	없음	
<b>기준가</b>	<b>산정방법</b>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b>공시장소</b>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id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b>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b>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87-35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midas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4년 08월 27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114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3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3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b>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 6개월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b>다른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기타	개인연금(C-P1)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퇴직연금(C-P2)</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기관(C-F)</b>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퇴직연금 사전 지정운용(O)</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midasasset.com](http://www.midas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http://www.midas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midasasset.com](http://www.midasasset.com))